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25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전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월 8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①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내용에 따라 기(既) 인증 받은 제품에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제조업체가 새로운 안전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기준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① 안전기준 개정시 기(既) 인증제품의 유예기간을 유형별로 차등적용하도록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 함

현 행	개 정
제11조(안전기준 개정시 기 인증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신 설>	제11조(안전기준 개정시 기(既) 인증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① 안전인증기준 개정시 기(既) 인증제품의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안전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안전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의한 전문위원회에서 기준변경 내용과 그 시급성을 검토하여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표시라벨·사용설명서 등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1년이하로 한다.
2. 인증제품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안전 기준 개정시에는 1년이상 2년이하로 한다.
3. 인증제품의 설계·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2년이상으로 한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 09. 12.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 내용의 연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파천시 교육원길 96

○ 전화번호 : 02-509-7242 (FAX : 02-507-6657).

| 기술표준2008.9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470 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구성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 요약 내용

□ 추진배경

○ 인증제도의 민간이양에 앞서 보다 효율적으로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물류설비인증요령」에 대한 일부 구성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증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물류 표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에 따른 용어 정의
 - 인증기관 민간이양과 관련하여 현행고시의 “물류설비인증업무(대행)기관”을 도법 상의 용어인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하여, 내용상의 용어도 인괄 정리(공통사항)
-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
 -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5항에 의거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에 적합하며, 인증신청기관이 제22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정의(제2조제11호 관련)
 -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5항에 의거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기관으로 정의(제2조제12호 관련)
- 물류설비인증 관련 위원회 개편
 - 물류설비인증 절차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물류설비인증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물류설비 기술위원회 및 물류설비인증 심의위원회에 관련 주요 기능을 추가하여 규정(제6조 내지 제10조 관련)
- 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 물류설비 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 규정
 - 민간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 및 인증 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인증기준 및 수수료 규정(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관련)
- 물류설비인증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정기검사에 의해 인증의 효력이 유지됨을 규정(제25조의 2 관련)
- 인증기관의 주요사항 보고 의무 추가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추가(제27조, 제28조, 제35조 및 제41조 관련)
- 정기검사 유예 규정 추가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증을 받은자가 인증당시와 동일한 인증설비 또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정기검사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제32조 관련)

붙임 :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 전문 1부

| 기술표준20089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482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05. 7. 1)의 친환경인증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업과 수요기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권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설치 등을 공성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정부부처명 변경 수정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재활용 과남효과가 큰 제품 발굴 및 선정을 위하여 인증대상품목 신청에 대한 사항 신설
- 나. 인증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및 인증평가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장심사 항목 및 평가표 신설
- 다. 사후관리에 따른 치분기준 근거 마련 및 치분절차를 정함
- 라. 인증마크표시에 제품명, 인증번호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인증 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 나. 기타 :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대상제품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제품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상제품의 적정성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대상제품이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인지 여부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제품심사·공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인증한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위원회에 신청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한 제품에 관한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재활용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와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판단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는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공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신청인에게 현장심사일 7일전에 심사일·심사내용 등을 통보하고 심사를 실시 한다.

③ 공장심사반은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표준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한 결과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1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국문·영문)를 교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해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이하 "인증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이 못쓰게 된 경우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 받은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 제품에 대한 년도별 판매 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